

금천구공고 제2020 - 1319호

**도시관리계획(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
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(재)열람공고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52호(‘15.02.26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재정비)되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19-883호(‘19.6.20)로 열람공고한 「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 결정(안)에 대하여 ‘20.9.23. 개최된 2020년 제13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라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금 천 구 청 장

1. 재열람사유 : 2020년 제13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

2. 열람내용

가.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②	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	시흥동 113-121번지 일대	82,982.0	감) 1,997.0	80,985.0	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

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준공업지역	82,982	감) 1,997	80,985	100.0	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신설	중로	3	379	12 ~20	집산	599 (487)	시흥동 113-119	시흥동 555-33	일반 도로	-	벚꽃로
기정	소로	3	11	6	국지	165	시흥동 113-125	시흥동 997-1	일반 도로	서고 제2006-204호 (06.06.08)	-
변경	소로	3	11	6~9	국지	165	시흥동 113-125	시흥동 997-1	일반 도로	서고 제2006-204호 (06.06.08)	-

■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①	녹 지	완충녹지	시흥동 1000-88 일대	570.0	감) 185.7	384.3	서고 2006-204호 (06.06.08)	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

■ 광장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①	광 장	일반광장	시흥동 113-108 일대	2,145.0	감) 61.9	2,083.1	서고 2006-204호 (06.06.08)	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

■ 공공청사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구분	기 정	변 경	변경후	최초 결정일	비 고
신설	A ^{주1)}	공공 청사	보건 관련 용도	시흥동 996일대	면적 (m ²)	-	증)2,299.3	증)2,299.3	-	종합의료시설 내 중복결정
					높이	-	지상1~3층 지하3층	지상1~3층 지하3층	-	

주1) 공공청사 A

- 공공청사는 금천구로 귀속되며, 금천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
- 각각의 건축 연면적은 향후 토지평가 등에 따라 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, 면적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임(전체연면적 2,999.0m²)

■ 종합의료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A	종합의료시설	시흥동 996일대	-	증) 24,720.6	24,720.6	-	공공청사 중복결정
			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m)		
				60	500	120		

라. 획지 및 건축물 등 기타 사항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3. 열람기간 및 장소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: 금천구청 도시계획과(11층) [문의사항: ☎02)2627-2062]

다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 장소에 비치)

4. 본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